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

- 조사 신뢰도 제고 및 영업비밀 보호 인식 확산 기대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중인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가 국가데이터처에 의해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38003호, '26년 1월)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의 통계로는 ‘지식재산권통계('76년)’, ‘지식재산활동조사('06년)’에 이은 세 번째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지식재산 보호 분야 조사의 공신력과 정책 활용도를 한층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식재산처는 2016년부터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지식재산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고, 조사 결과의 대외 신뢰도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작년에는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2025년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통해 모집단 구축, 표본 설계, 조사 방법 등을 개선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과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관리·보호 현황, ▲정책 인지도 및 수요, ▲유출 피해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매년 조사하여 공표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지식재산보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창대 (042-481-5213)
		담당자	사무관	김준환 (042-481-3569)

□ 조사 개요

○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

*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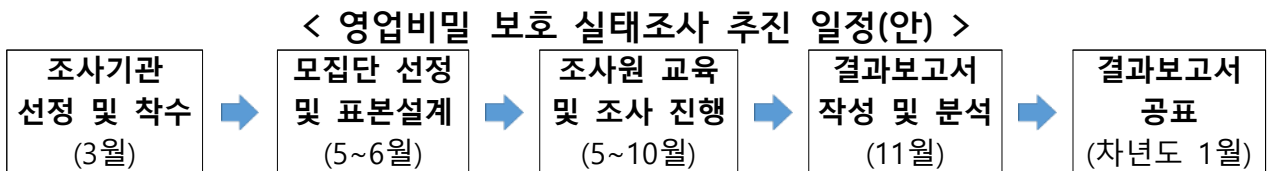
○ (목적) 영업비밀 보호 및 유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식재산 보호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승인) 국가데이터처 협업*을 통한 실태조사 개선 후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지정(‘26.1.12)

* 통계 개발·개선을 통해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지원하는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 참여

□ 조사 절차 및 내용

○ (조사절차) 판별조사를 통한 모집단 선별, 표본 설계 후 본조사 실시



○ (조사항목)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 현황, 관련 정책 인지도 및 수요, 유출 피해 및 대응 현황 등

<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주요 내용 >

조사 대상	기업	영업비밀을 보유한 10인 이상 기업체(2,000개) - 기업통계등록부 상 제조업,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기업체 중 판별조사를 통해서 적격 기업체 선별 및 모집단 구축·표본 설계
	대학·공공연	산업재산권 보유 대학·공공연 전수조사(약 500개) - 최근 10년간 지식재산처 DB에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대학·공공연
조사 항목	기업	9개 항목, 총 46문항 - 영업비밀 관리 및 보호 현황,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인지도 및 수요, 신기술에 따른 영업비밀 관리 현황, 유출 피해 및 대응 현황 등
	대학·공공연	8개 항목, 총 43문항 - 연구정보 관리 및 보호 활동 현황, 보안 인프라 현황, 관련 정책 인지도 및 수요, 유출 피해 및 대응 현황 등